

의료기기안전평가과 공무원 채용 공고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근로자 운영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23호)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기안전평가과 공무원 근로자(심사원)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0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가. 채용인원 : 총 4명 (심사원 다급 3명, 라급 1명)

나. 자격요건

채용분야	인원	수행 업무	응시 자격
심사원 다급	3명	○ 품목갱신 민원 검토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○ 전문 분야별(전기기계, 의료용품, 체외 진단, 디지털의료기기) 품목갱신 심사 ○ 융복합·조합 의료기기, 임상자료 심사로 허가된 제품, 신개발의료 기기 등 갱신 심사 ○ 제도 관련 연구 사업,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결과에 따른 현장 조사 필요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○ 국민신문고, 상담 등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관련 유관기관 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'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

채용분야	인원	수행 업무	응시 자격
		○기타 의료기기 사후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	
심사원 라급	1명	○ 품목갱신 민원 검토 및 처리, 지원에 관한 사항 ○ 제도 관련 연구 사업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결과에 따른 현장 조사 필요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○ 국민신문고, 상담 등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관련 유관기관 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○ 품목갱신 관련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○ 기타 의료기기 사후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 ○ '국가기술자격법'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실적이 있는 자

※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※ [관련분야] 의과(공)학, 전기·전자공학, 소프트웨어 공학, 컴퓨터공학, 의용생체공학, 의용전자공학, 생체(재료)공학, (응용)물리학, (생)화학, 화(공)학, (분자)생물학, 생명공학, 무기재료학, 물리학, 기계공학, 기계설계공학, 고분자공학, 금속공학, 신소재공학, 제어계측공학, 전파공학, 치과(학), 임상의학, 규제과학(의료제품 분야) 등 유사 분야

다. 공통사항(면접일까지 지원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함)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라. 우대사항

-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
*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

응시할 수 있음(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)

- *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가. 신 분 : 공무직근로자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
나. 근무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
- *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에 따라 향후 근무지가 변동될 수 있음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」 제24조(전보)

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, 공무직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를 실·국 또는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거나, 다른 실·국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. 다만, 기간제근로자를 전보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.

1. 전보예정자가 전보예정직무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

다. 계약기간

- 채용계약일로부터 '26년 12월 31일까지(회계연도 기준)

※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 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
라. 근무 시간 : 주 40시간

마. 보수 수준

구 분	월 기본급
심사원 다급	2,675,000원(연봉 32,100천원)
심사원 라급	2,158,330원(연봉 25,900천원)

- * 정액급식비(월16만원), 시간외근무수당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 시), 맞춤형 복지포인트(1년 이상 근무 시) 별도 지급

** 4대 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가. 전형 일정

-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: '26. 9. 10.(목) 9:00 ~ 9. 17.(목) 14:00
- 접수 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s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(온라인 접수만 가능)

※ 원서접수 시 유의 사항: 응시 분야와 응시 등급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
나. 제출 서류

구분	내용
공통 서류 (필수 제출)	- 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 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붙임1) 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붙임2) - 주민등록초본(남·녀 공통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) -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 ※ 석·박사 수료 및 수료 예정 증명서 미인정 - 성적증명서(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)
선택 서류 (해당자 제출)	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응시원서에 기재한 '담당 업무'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※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미인정 - 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(운전면허 제외) - 연구목록 등 기타 증빙서류 - 어학성적서 -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다.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

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

- *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'담당 업무'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파일 오류 및 암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은 공고 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-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출신학교, 출생지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 후 제출
- 최종학력 증명서, 성적증명서는 이력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으므로, 원본 그대로 스캔 후 제출

라. 면접시험 주의사항

- 면접시험 시작 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

4. 시험방법 및 일정

가. (1차 심사) 서류전형

-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'26. 9. 18.(금) 예정
- * 채용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

나. (2차 심사) 면접시험

- 채용분야 적합성, 전문가로서의 능력,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
- 면접시험 예정일: '26. 9. 22.(화) 예정
- *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(개별 통보)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'26. 9. 28.(월) 예정

- * 채용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,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
- ** 채용계약은 신원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임

5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다.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라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(☎ 043-719-5006)
 - *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.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약칭: 채용절차법)」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(제17조제1항 관련)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	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	근로관계 종료 후 3년

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	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	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(제24조제2항 관련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u>공직자로 재직</u>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' 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지 원 자

(서명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